
<附錄> 유럽 통합의 개략

- (통합의 모태) 1834년 프러시아의 관세동맹을 모체로 진행된 유럽통합은 1950년대에 이르러 가시적인 움직임으로 구체화되었음
 - 1950년대 이래 ECSC, EEC등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유럽의 경제협력은 80년대 들어 신보수주의 물결과 함께 유럽의 정치적, 경제적 통합으로 전화되었음
- (통합의 전환점) 1992년의 역사적인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럽통합은 가시권안에 들게 되었음
 -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유럽의 완전 통합으로 가는 일정을 제시하였음
- (통합의 득과 실) 유럽통합이 이루어지면 직접비용 축소, 경쟁비용감소, 규모의 경제실현 등의 이익이 창출될 것이나 각국간 이해관계의 차이, 각종 구조조정 비용 등 기회비용 요소도 산적해 있음

(1) 유럽 통합의 역사

□ 19세기말 유럽 연합의 태동

프러시아 관세 동맹 이래 유럽통합은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

- 유럽 경제 통합의 역사는 1834년 프러시아의 관세 동맹(Zollverein)을 통한 독일 연방 통합으로부터 시작되었음. 이는 최근까지 유럽 통합의 모체로 작용함
 - 1897년 오스트리아의 외무부 장관인 Count Guluchowski는 미국의 독과점 관행을 저지하고 유럽의 보호 무역 주의를 주장하는 소위 “유럽의 요새화(Fortress Europe)”를 주장함
 - 제 1차 세계 대전은 유럽 단일화를 저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나, 경제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확산되었음.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통합 유럽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지게 되었음
 - 1929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연방제가 형성되어 1930년 유럽의 공동 시장(Common Market)이 형성이 진행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음

□ 전후 복구와 유럽 협동 체제

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짐

-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은 경제 회복과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를 이유로 유럽 협력의 가치를 내걸고 유럽 통합을 추진하였음
 - 1944년 베네룩스 3국은 관세 동맹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화, 노동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경제협력체를 형성하였음
 -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팽창으로부터 주권 확보를 위해 유럽 공동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
 - 드골 대통령의 경제 자문이었던 Jean Monnet은 미국의 연방제와 비슷한 유럽 공동체의 창시를 주도하여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(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)를 창설함
 - 이 시기의 유럽 협력체는 전후 유럽 복구라는 명목 하에 미국의 협력으로 구체화되었음

□ 실질적 협력 기구의 탄생

ECSC, EEC등의 기구가 창설되면서 통합의 기반이 다져지기 시작함

- 1950년대 이후는 유럽 통합이 가시화 되면서 실질적인 경제 협력 기구들이 창설되기 시작됨
 - 1951년 프랑스의 제청으로 형성된 유럽 석탄 및 철강 협력 기구(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)는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그리고 베네룩스 3국이 참가한 경제 협력 기구임
 - 이후 ECSC의 참가국(6개국)들은 1957년 로마조약(Treaty of Rome)을 통해 유럽경제 공동체(European Economic Community)를 창설하고 역내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공동 외적 관세(Common External Tariff)를 적용시키는 등 경제 통합의 기초를 확보하였음
 - 한편 EEC의 창설에 거부감을 보이던 영국은 1960년 오스트리아, 덴마크, 스웨덴, 노르웨이, 그리고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자유무역지역(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)을 창설하였음

EMS창설 등으로 통합노력은 지속되었으나 오일쇼크 이후 회의론이 대두됨

- 1960년대를 거치면서 EEC는 European Commission, European Parliament, 그리고 European Court of Justice 등을 정비하면서 입법, 사법, 행정 등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영향력을 확대시켜나가기 시작하였음
- 이후 EEC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자, 영국은 1973년 덴마크와 아일랜드 등과 함께 EEC에 참가하게됨
 - 1974년 EEC는 유럽협의회(European Council)를 결성하였고 1979년 유럽통화체제(European Monetary System)를 출범시킴으로써 유럽 통화 단위(European Currency Unit)를 통한 통화 안정을 꾀하였음
 - 그러나 1-2차 오일 쇼크로 인해 유럽회의주의(Europessimism)이 확산되기 시작함. 이는 1970년대 유럽의 실업률이 2.3%에서 1985년 11.9%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유럽에서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음

□ 1980년대 단일 시장 및 통화 통합 구상의 구체화

80년대 들어 유럽평의회에 의해 통합의 구체적인 작업이 개시되었음

- 1985년 유럽평의회는 1992년 유럽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Time Table을 설정하고 완전한 단일 시장으로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함
 - European Commission은 백서(White Paper)를 통해 1992년 단일 시장 형성을 위해 물리적,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300 개의 실질 강령을 작성하였음
 - 한편 유럽 통합의 득과 실을 분석한 Cecchini Report는 유럽 단일 시장이 형성되면 유럽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제고되어 유럽의 국민총생산(GDP)은 5%, 일인당 실질 소득은 \$8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음
- 1987년 유럽단일의정서(Single European Act)의 채택으로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단일 시장의 합의

단일의정서 채택으로 단일시장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에 도달함

를 이루어 냈음

- 유럽단일의정서는 과거 로마조약 당시 채택되었던 만장일치제에서 다수동의제로 전환하는 융통성을 부과하였음
- 또한 유럽 단일의정서는 진정한 유럽 통합을 위해서는 물리적, 기술적, 그리고 재정적 장애 요인 해소도 중요하지만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
- 유럽 통합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환율 교환에 따른 금융비용이라는 것을 강조함

- 1989년 소위 Delors Committee라고 알려진 통화통합 위원회에서는 통화 통합을 위한 단계 및 유럽중앙은행 체제, 유럽 통화간의 환율 고정 등을 제시하였음

<유럽통합의 역사>

- 이후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경제, 통화, 그리고 정치 통합을 이룩하자는 협약을 공식화하였음
-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Delors 보고서에 기초해 통화 통합의 단계를 확정하였음

들로르 보고서에서 통합의 일정이 제시된 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단계가 확정됨

-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유럽연합(European Union)이 공식적으로 탄생하였음
- 유럽연합(European Union)은 3가지 기준을 설정하였음
 - 첫째는 과거의 3가지 유럽 기구(EC, ECSC, Euratom) 등을 통한 초국적 유럽기구에 의한 경제적·사회적 협력임
 - 둘째는 각 정부간의 조정을 통한 외교 정책 및 지역 안보의 협력임
 - 셋째는 정부간 행정 조정을 통한 법적 사항에 대한 협력임
- 유럽연합(European Union)은 이후 내적 외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보다 확고히 실행하였음

- **19**

-
- 1
-

-

-

- (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)

- **1950**

-

- 1957

- (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)
- (European Economic Community)
- (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)
- (European Council)
- (European Monetary system)

- **1980**

-

-

- (European Single Act)

- **1990**

-

-

- (European Union)
- (Economic and Monetary Union)

(2) 유럽 통합의 득과 실

단일시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생산 증가 및 고용 안정임

이는 직접비용 축소, 경쟁 비용 감소, 그리고 규모의 경제 실현 등과 같은 시장 개방의 효과와 일치함

- 유럽이 단일 시장으로 통합함으로써 얻는 것과 이에 상응하는 기회 비용은 1988년 상술한 Cecchini 보고서에 의해서 정립되었음
 - 회원국간의 비관세 무역 장벽(Non-Tariff Barrier)이 무너지면 유럽의 국내총생산은 중기적으로 5%의 상승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었음
 - 이 보고서는 유럽 통합의 진행 단계 및 과정에 따라 다른 형태의 경제 이익이 발생한다고 진단함

- (통합의 이익) 유럽 통합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
 - 첫째는 ‘직접 비용 축소’임
 - 이는 유럽의 단일 시장이 형성되면 소비자, 생산자 및 정부가 낮은 비용으로 중간재 및 완제품을 조달할 수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용의 감소임
 - 또한 국경 통과 및 세금부과에 관련된 행정 비용이 감소함
 - 둘째는 ‘경쟁 비용 감소’임
 - 시장이 확대되면 지역 독점기업들은 과점 또는 독점 이익이 감소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제품의 질이 제고되고 생산 효율성이 높아질 것임
 - 셋째는 ‘규모의 경제 실현’임
 - 향후 유럽기업들의 효율성이 제고되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생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을 것임
 - 넷째, 장기적으로 유럽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EU의 투자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효과가 유지되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생산이 늘어날 것임

- (기회 비용) 유럽회의주의자들(Europessimists)은 단일 시

반면 범죄 증가, 테러, 마약 밀매의 증가 등이 예상되며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실업 문제, 이익의 공평성 등이 문제로 남아 있음

장을 형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

- 이들은 국경 검열이 없어지면 각종 범죄가 증가되고, 테러, 마약 밀매 등이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음
- 유럽 각국은 자국의 조세, 제품 분배, 그리고 독과점 규제 등의 차이는 국가별로 쉽게 동일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
- 각국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기준은 국가의 특이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
- 통합에 따른 시장 구조의 변화로 인해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는 구조조정 비용 또한 상당할 것임
- 더욱이 유럽 통합으로 인한 경제 이익은 회원국별로 동등하게 분배될 수 없기 때문에 불평등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 회원국 결속의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음

○ 유럽단일시장은 결국 19세기부터 주장되어진 유럽의 요새화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非회원국들과의(특히 미국과의)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일시장 밖의 환경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됨

- 유럽 통합은 결국 非회원국들의 차별화를 통해 완성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역외 국가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만약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통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음
- 반면 미국과 일본, 그리고 캐나다의 기업들은 단일화된 유럽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역외 무역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역외 경제권에 긍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지배적임. 이는 GATT 체제의 이행을 통해 국제적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방향과 유럽의 통합이 일관성이 지니고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임

(3) 유럽 통합을 위한 정책 기구 결성

유럽통합의 정책기구는 EU를 중심으로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

- 앞에서 언급한대로 1950년대 이후의 유럽 통합을 위한 기구들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주요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은 아래 표와 같음
- 이들 기구들은 EU의 정책 결정 및 의사 결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 통합이외에도 정치 및 법률적 협력 기구들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

<EMU구성 이전의 유럽연합 조직>

	구성 및 운영	기능 및 역할
유럽 협의회 (European Council)	- European Commission의 의장과 각 회원국 대통령 및 수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- 일년에 2회 이상 회담	- 유럽연합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 협의
유럽 평의회 (European Commission)	- 각국 정부가 지명한 20인의 전문인으로 구성 - 회원은 각국 정부 및 유럽 의회의 동의에 의해 설정	- 유럽연합 조약에 의거한 각 분야별 실질 업무 수행(농업, 교통, 산업, 통신 그리고 교육 등)
EU 장관 협의회 (EU Council of Minister)	- 각국 장관 및 공식 대표로 구성	- EU 실질 정책 조정 기구
유럽 의회 (European Parliament)	- 각국이 선정한 626명의 의원으로 구성 - 각 정당의 역할을 대변(사회주의, 기독교 민주주의, 녹색당 등)	- 정책 협의 및 조언 기구 - 재정 사항 결정 및 일부 유럽합의회 및 장관 협의 회 사항 거부권 행사
EU 최고 법원 (EU Court of Justice)	- 각 회원국이 1인씩 선정한 법관 및 9명의 추천인으로 구성된 최고 법률 기구	- EU 연방 법원 - EU의 각종 조약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 - 그러나 각 정부의 법원과 법률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는 없음
EU 회계 감사 기구 (EU Court of Auditors)	- 각 회원국이 1명씩 선정한 판사와 335명의 Staff로 구성	- 금융 회계의 정확성을 점검 - 부적정한 비용, 사기 등을 감독
EU 경제 및 사회 협의회 (EU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)	- 222명으로 구성된 각 이익 집단의 대변 기구	- 산업, 노동계, 소비자 등의 의견 수렴 - 다른 유럽 기구들의 정책 결정 이전에 협의 및 조언 기구

<EU의 조직과 EMU의 구성 체계>

